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75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2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박용갑 · 임미애
박희승 · 양부남 · 박민규
김성범 · 안호영 · 이해식
박지원 · 허영 · 서영석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, 이에 대해 시정조치,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,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·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.

특히,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,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.

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영업자를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

경우'를 추가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(안 제75조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74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제1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1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
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
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1. ~ 20. (생략) <u><신설></u>	1. ~ 20. (현행과 같음) <u>21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</u>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